

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4. 11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4. 11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4.25)상정.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허용택 문화공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근거법인 「청소년기본법」 전문개정(2004. 2. 9공포, 2005. 2. 10시행)으로 인해 조례제정의 근거 조항인 동법 제22조가 제27조로 개정되었고,
- 청소년지도위원 인원수 부족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으로 각 동 협의회 별 인원수 상향조정 건의 및 청소년보호·육성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조례 근거조항 수정 : 제22조 ⇒ 제27조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)
- 지도위원 수 조정 : 10인 ⇒ 15인(안 제2조제2항)
- 위원증 기재사항 수정 : 제22조 ⇒ 제27조(안 별표)

3. 관계법령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27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조례재정의 근거법인 근거법인 「청소년기본법」 전문이 개정(2004. 2. 9공포 2005. 2. 10시행)됨에 따라 그 근거조항이 변경(제22조→제27조)되었기에 변경된 조항(제27조)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과
- 각동별 지도위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인데
- 본 개정사항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의 절차를 결한 문제가 있음
- 본 조례 개정안중(안 제2조) 각동의 청소년 지도위원수를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하여 청소년을 보다 능률적으로 선도하려는 좋은 취지가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실무진의 자의적판단에 의거 진행되어도 좋을지 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”를 참조하여 깊이 생각한 후 의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

5. 결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